

#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66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6. 6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노숙인의 복지 기틀을 마련하고 노숙인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능력을 향상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노숙인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 (안 제2조)
  - 필요한 정책 마련 및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함
-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(안 제6조)
  -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 ·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
- 비용의 지원 (안 제7조)
  - 사업 수행 관련 단체,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

## □ 제정조례안 : 붙임

### □ 신 · 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#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###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# □ 예산수반사항 : 붙임(비용추계서 참조)

### 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15. 4. 29 ~ 2015. 5. 19. (21일간)

### □ 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방침결정문

#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,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전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시장의 책무)**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 
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시행계획 수립 등)**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 
1.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 
2.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 
3.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·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 
4.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 
5. 그 밖에 시장이 노숙인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
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·요청할 수 있다.  
④ 제3항에 따라 협조·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실태조사)**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 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  
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·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대상 사업)**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
2.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
3.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· 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서비스
4. 노숙인 등의 자활 · 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
5.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

**제6조(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)**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 ·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 ·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7조(비용의 지원)**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이 설치한 노숙인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지도 · 감독)**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 · 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조(인권교육)** 시장은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비밀누설의 금지)**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복지정책과장 이 창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자활지원담당 차현실 (행정 2379)

#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2661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7월 8일  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## □ 제안이유

-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조항 간 상호 불 부합되는 부분에 대하여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함

## □ 주요내용

- 안 제5조(지원대상 사업)에서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를 삭제함
- 안 제6조(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)에서 “노숙인 복지시설”을 “노숙인 시설”로 수정하여 관련법의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함

# **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 중 “예산의 범위에서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수정하고,  
안 제6조의 제목 “(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)”을 “(노숙인 시설의 설치·  
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1항 중 “노숙인 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”  
를 “노숙인 시설”로 하며, 제2항 중 “시설”을 “노숙인 시설”로 수정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>제5조(지원대상 사업)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<u>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</u>)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·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<u>노숙인 복지시설</u>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<u>시설</u>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지원대상 사업)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<u>노숙인 시설의 설치·운영</u>)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·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<u>노숙인 시설</u>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<u>노숙인 시설</u>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p>